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권철승 · 김문수
조계원 · 김 윤 · 김태선
진성준 · 이수진 · 장종태
김영환 · 서영석 · 서미화
한준호 · 황명선 · 조정식
홍기원 · 전현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,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, 「주거기본법」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·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,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「주거기본법」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「주거기본법」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 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 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 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가. ~ 허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고.</u> (생략) 2. ~ 7. (생략)	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허. (현행과 같음) <u>고.</u> 「주거기본법」 <u>노.</u> (현행 고목과 같음) 2. ~ 7. (현행과 같음)